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최광옥 의원외 7인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일/ 2009년 6월 4일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09년 6월 10일

-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2. 개정이유

○ 우리도의회 회의운영 및 의사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

○ 도민에게 입법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

○ 조문의 체계나 자구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의원등록을 임기 초에 하도록 규정된 것을 당선인 결정 후에 하도록 함.

○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도 본회의에 직접 부쳐 의결할 수 있는 13개 항목을 신설함.

○ 도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제를 신설함.

○ 의회에서 이송한 조례를 도지사가 공포 즉시 의회에 알리도록 함.

○ 결산심사 결과 위법,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서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은 대법원의 판례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를 삭제함.

○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기한 및 심사 연장기간을 각각 3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4. 검토의견

○ 금번 개정 규칙안은 2007년 12월 규칙 개정 이후 그 동안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도의회 회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규칙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